싱가포르 조정 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일본측 보고 야마다 아야(山田文)(교토대학)

1. 처음으로 - 일본법의 상황 소개를 겸하여

(1) SG조약 가입 및 조정·중재의 집행력에 관한 법 개정  
「조정에 의한 국제적인 화해 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SG 조약)의 취지는 조정 이용에 의한 상사 분쟁의 우호적 해결, 상사상의 관계 종료의 회피에 주목하여 조정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집행의 국제적인 스킴(역자주: 제도, scheme)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 스킴이란 집행을 요구받은 체약국의 권한기관이 집행거부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뉴욕협약과 유사하다. 여기서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가 당해 당사자에게 해결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제3자(이하 "조정인"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당해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이며(조약 2조 3), 조정인의 자격 등의 규정은 없다. 또한 집행거부사유는 별지와 같이 화해 합의의 실체법상 무효·취소, 채무내용의 불특정, 채무의 전부 소멸, 조정인에 의한 법령·준칙 위반, 조정인에 의한 공개의무 위반, 화해적격의 흠결 및 공서양속 위반이다(조약 5조 1(a)-(f)).  
일본은 2023년 10월 1일에 SG 조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올해 4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실시법으로 「조정에 의한 국제적인 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의 실시에 관한 법률」 (2023년 법16호)을 제정했다.[[1]](#footnote-1)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SG조약상의 옵트인 유보선언(조약 8조 1(b)을 첨부하고 있으며,[[2]](#footnote-2) 국내실시법상으로도 “이 법률의 규정은 국제화해합의의 당사자가 조약 또는 조약의 실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민사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동법 3조)로 한다.  
한편, 국내의 민간 ADR(조정) 절차에 의한 화해의 집행력 부여에 대해서는, 「ADR법(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04년 법 151호)) 성립시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집행권원 남조(濫造)의 우려가 지적되어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SG조약 가입을 계기로 집행력의 의의나 ADR 이용촉진의 효과가 재차 인정되고, 또한 정당성 담보의 스킴도 구체화됨에 따라 ADR법을 개정하여(2023년 법 53호) 확정된 집행결정이 있는 특정 화해[[3]](#footnote-3)(동법 2조 5호. 민사집행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요구된다)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동법 28조, 민사집행법 22조 6호의 5). 다만, 소비자분쟁, 개별노동관계분쟁, 인사·가정에 관한 분쟁(단, 부양의무 등과 관련된 정기금채권[민사집행법 151조의2 제1항 각 호]을 제외한다) 및 조약실시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분쟁은 적용 제외이다(ADR법 29조 각 호). 따라서 SG조약의 적용범위와의 관계에서는, ADR법에 의해, B2B 분쟁 외, SG 조약의 적용 외인 C2C 분쟁 및 부양의무 등과 관련된 정기금채권과 관련된 분쟁에도 집행력이 부여되게 되었다(민사집행법 22조 6호의 5).   
또한, 이러한 조정에 관한 입법과 동시에, 2006년 UNCITRAL모델중재법법을 채택하여 중재법(2003년 법138호)을 개정하고, 집행 등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중재판정부에 의한 잠정보전조치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기로 했다(중재법 49조·50조, 민사집행법 22조 6호의 3).[[4]](#footnote-4)  
SG 조약에 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드물게 빠른(급전직하의) 결단이었지만, 한국은 2016년에 모델중재법을 채택하고 2019년에 SG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본도 겨우 국제상사중재·조정의 조류를 따라잡게 되었다.

(2) 입법의 배경  
이러한 입법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는 정책 차원에서는 사법제도 개혁(2001년) 이후의 이용촉진정책, 최근의 경제정책으로서의 국제중재·조정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5]](#footnote-5) 또한 ADR법 시행 이후 많은 ADR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6]](#footnote-6) 또 변호사가 관여하는 ADR도 증가해 그 실적에 따라 일정한 사회적 신용을 얻은 것이 이번 개정에서 집행권원남용론이 주장되지 않았던 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3) 집행력 부여의 영향  
무엇보다도, 조정에 의한 화해 합의(이하, ADR화해라고도 한다)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집행권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ADR만이 가능한 임의 이행의 기대나 그 기초가 되는 당사자간의 신뢰성에 대한 무감각,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차적인 자유의 상실, 당사자의 위축의 우려 등의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ADR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지만, 절차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는 메타 레벨의 자유도를 강조한다면, 강제집행의 이용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범용성 있는 ADR의 디자인이 된다고 응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집행력 부여를 전제로 하여도 사적 계약인 ADR화해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근거에 대해 조정인의 역할을 포함하여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7]](#footnote-7) 또한 집행거부사유에 조정인의 행위가 포함된 것은[[8]](#footnote-8), 이것은 당사자신청사유로서 공서와는 구별되지만, 조정에 넓은 의미의 due process의 발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절차의 구조화로서 경계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지만, 절차의 유연성과 due process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체적 지위와 합의의 진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이며, 분쟁 유형이나 당사자의 속성 등에 따라 양립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분쟁 등 당사자간에 정형적인 격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due process의 고정화를 생각할 수 있지만, B2B 분쟁이라면 조정인의 관여의 방법을 개별적인 합의로 결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장래에는 분쟁유형별 due process를 검토해, 분쟁별 전문점(専門店)을 내는 이미지로 ADR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인지도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4)일본법 고유의 과제  
본 보고는 한일 공통의 과제로서 상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일본법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해 둔다.  
일본에는 흑선래항(黒船来港)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SG조약의 가입으로 국제조정과 국내조정에서 조정인의 자격 등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9]](#footnote-9) SG조약에 따라 국제조정에서는 조정인의 자격을 불문하고 인증에 의한 규율도 없는 조정절차에 의한 ADR화해에 집행력이 인정되는 반면, [국내조정에서는] 설령 변호사회가 운영하고 변호사가 조정인이라 하더라도, 인증을 얻지 않은 한 이번 스킴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ADR법이 인증기관에만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구조인 것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균형이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10]](#footnote-10) 또, 소비자분쟁 등은 당사자간의 정형적 격차를 이유로 적용 제외되었지만, 소비자가 채권자가 되는 경우나 장기의 분할변제가 되는 경우 등은, 집행력을 주는 것이야말로 당사자간의 형평에 맞는다(부양료등과 관련되는 분쟁이 적용대상이 된 것도, 같은 취지일 것이다). 장래에는 분쟁 유형에 따른 특칙을 마련하는 등 집행력을 부여하고, ADR화해의 합의뿐만 아니라 실현까지 염두에 두고(단, 실현방법은 강제집행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결절차의 선택·형성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ADR 화해에 근거한 집행력의 근거 및 정당화

(1) 재판 이외의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의 정당화  
민사집행에서의 실체적 정당성은 권리의 개연성·즉시청구가능성에 의거하지만, 집행권원 제도에 따라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와 그 기재내용이 실체적 정당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11]](#footnote-1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집행권원에서는, 이 실체적 정당성은, 집행권원상의 「실체권의 존재의 판단」이 아니라[[12]](#footnote-12) 해당 합의의 진정한 성립에 의하여 기재내용과 합의된 권리관계와의 합치의 개연성이 높은 것에 근거한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집행권원의 성립과정에 채무자의 관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의 보장에 의해 민사집행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13]](#footnote-13)  
그래서 이것을 이번 스킴에 적용시켜 보면, 실체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합의의 진의성은 제1차적으로는 조정인이 보장하고, 나아가 집행결정 및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어(더욱이 즉시항고의 기회도 보장하고) 법원에 의한 보장을 실시한다고 하는 이중의 판단 체제이며, 신중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다만, 조정인이 어느 단계부터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이중이라고 해도 일률적이지 않다).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도 조정인의 중개에 의하여 채무자의 절차관여의 기회를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기록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당사자의 민사집행 합의를 얻음으로써 자기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함과 동시에 임의이행과의 비교형량을 포함한 절차선택을 하는 의미에서도 절차적 관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재판 이외의 집행권원인 ① 집행증서(민사집행법 22조 5호) 및 ② 중재판정(동조 6호의 2)과 비교하면,  
① 집행증서는 공증인이 공적기관으로서 실체적 정당성을 공증하기 위해 실체법상 무효 등을 확인하고(공증인법 26조) 집행수락 문구를 확인한다. 다만, 합의 성립 후의 관여이며, 공증인에 의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의 형성 과정의 확인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집행증서의 대상이 금전청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의 균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은 재판을 대신하는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중재합의의 성립 및 중재법상 판단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보장이 확보되어 이것들이 중재판정부 및 집행 결정에 의해 판단되는 것에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조정에 관해서도 공정한 제3자(조약 5조 1(f)의 집행거부사유 참조)와 집행결정에 의하여 실체적 정당성이 확인되고,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도 조정이용합의[[14]](#footnote-14)에 의해 적용되어야 할 준칙에 근거한 절차가 실시되면(동조 1(e)의 집행 거부 사유), 채무자의 실질적 관여 기회는 보장된다고 생각된다(그렇지 않으면 집행결정절차에서 거부사유가 주장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중재에 비하면 절차적 정당성의 제도적 담보가 약하다(개별적 증명에 지음)는 것은 지적 가능하며, 그 점에서 SG조약 스킴의 채용에 의해 정당화론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민사집행합의를 요구함으로써 정형적·제도적인 정당성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일본법 고유 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대교섭에 의한 화해계약과의 대비  
이렇게 보면 ADR화해의 집행력을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① 화해합의 형성과정(조정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조정인에 의한 동시적인 실체적 정당성(합의의 진의성)의 담보, ② 집행결정절차에 의한 사후적인 실체적 정당성의 담보, ③ 조정인의 (개별사건에 적용되는) 행위규범의 준수 및 집행결정절차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 담보를 들 수 있다. ③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절차관여 기회보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due process에 의해 정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15]](#footnote-15)민사집행합의도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런데 SG 조약상, 조정인의 중개의 본연의 자세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예를 들면 합의 형성의 최종 단계만 관여하는 경우도, 그것이 당사자가 예정하는 준칙(공서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따르고 있는 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거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게 된다. 합의 후의 관여에 관해서는 곤란한 문제이지만, ①에 대해 개별 분쟁과의 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실질이 인정되고, ②에서 이것이 주장·증명되어, ③에서 준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16]](#footnote-16)  
일본법에서는 이 경우에 집행채권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집행증서제도와의 관계가 문제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사고실험(思考実験)으로서는 조정인의 관여가 제로가 되는 장면(상대 교섭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상대 교섭에 의한 화해를 선택하고, 화해 계약(민법 695조)의 성립에 의해 분쟁을 그만두는(제소하지 않는) 의사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집행에 의한 결과 실현을 상정하는 ADR 화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인 분쟁해결의사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재 판단의 집행력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대체하는 분쟁해결선택의사의 합리성이 근거로 여겨지지만, 만일 교섭에 의한 화해 합의에 대해도 화해계약의 성립을 조건으로서 같은 의사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입법상, 집행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 공적인 판단의 제도를 마련해, 상대 교섭에 의한 화해합의에 실체적 정당성·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것을 근거로 하는 집행력을 아프리오리(アプリオリ, [라틴어]a priori, 선험적, 선천적)로 배제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법정책도, 현재의 집행 스킴 하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①의 부재를 ②로 보충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비용이 한층 커지고, 당사자도 증명 곤란 등으로 인해 집행력 부여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역시 비용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7]](#footnote-17) 또한, 상대 교섭에서는 교섭 행동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어려워[[18]](#footnote-18) 제3자인 조정인의 존재는 교섭의 합리화에 있어서도 유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화해합의를 기반으로 집행력의 근거를 파악하는 것은, 집행증서 외 재판 이외의 집행권원과의 관계에서도 정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변호사간의 교섭 결과에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제도도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3． 남겨진 과제들  
　일본에서는 중재·ADR 모두 종래의 입법 과제는 실현되었지만, 집행의 합의를취하는 방법 내지 배제 방법, 화해의 집행권원화의 어려움, 집행이 실패한 경우의 대비,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대응 등, 집행에 관한 실무상의 과제는 많이 존재한다. 또한 중재·ADR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을 예정하지 않는 ADR 등 다양성을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분쟁 유형에 의한 집행의 가부를 근거로 한 알기 쉬운 절차 디자인이 필요하다. 또한 소프트면(잠재적 이용자나 절차 이용을 조언하는 실무 법조에의 어프로치, 조정인·중재인의 연수, (다층적) 분쟁 해결 조항의 침투, 기관규칙의 궁리 등)의 충실도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1.에서 기술한 국제·국내 조정의 어긋남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인증제도의 기본방향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ODR에 의한 화해합의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의 제도로 대응하는 것이 상정된다. ODR은 개발되는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있어, 사전에 규범론은 세우기 어려운 것 처럼 보이지만, 일본과 같이 소송건수도 ADR·중재건수도 적은 가운데 ODR이용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주시를 요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섭외거래에 의한 국제성이 있는 분쟁 범위는 확대되고, B와 C의 구별도 실질적으로는 희미해지고 있어 ADR·중재의 중요성(실질적으로는 제1차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절차가 된다)은 종래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 같다. 본 대회를 계기로 ADR·중재와 관련된 정보교환이나 인적 교류를 한층 더 확대하고, 절차의 기본을 공통으로 하는 국가끼리의 연수 등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 기본적으로는 조약에 따른 규정이지만, 집행력에 견줄 수 있는 구제가 된 효과, 즉 화해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이를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원용을 허락하는 것(조약 3조 2)은 일본에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입법화하고 있지 않다. [↑](#footnote-ref-1)
2. 현시점에서 회원국(13개) 중 같은 유보 선언을 한 나라는 일본 외 조지아와 카자흐스탄이다. [↑](#footnote-ref-2)
3. '특정화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후 ADR법 2조 5호).  
   "특정화해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 분쟁의 당사자 간에 성립한 화해로서, 해당 화해에 근거하여 민사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footnote-ref-3)
4. SG 조약실시법 및 ADR법 개정의 심의는 원래 중재법의 개정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심의회 중재법제부회에서 중재·조정의 제휴에도 비추어, 중재를 포함한 ADR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동시에 행해진 것이다. [↑](#footnote-ref-4)
5. 2020년에는 외국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외국변호사의 업무에 국제조정사건의 법률사무가 추가된 것이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footnote-ref-5)
6. 2024년 현재 169개 절차가 인증을 받았다. [↑](#footnote-ref-6)
7. 山本和彦「仲裁の暫定保全措置及びADR和解の執行力について」慶応法学50号309頁（2023）331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집행력의 근간에 관한 문제를 내포한 개정인 것 또한 사실이다.···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인 외국 법원에 있어서의 보전처분이나 재판상의 화해에 대한 집행력의 부여에 관한 논의도 진전되어, 어떠한 해결이 장래적으로 도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다. [↑](#footnote-ref-7)
8. 조약실시법 5조 12항 5호·6호는 다음과 같다(SG조약 5조 1(e) (f)와 같다).  
   　5. 조정인이 법령 기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조정인 또는 해당 조정인이 실시하는 조정에 적용되는 준칙(공공질서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하는 사실이 중대하고, 해당 국제화해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6. 조정인이 당사자에게 자기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실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중대하고, 해당 국제화해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 [↑](#footnote-ref-8)
9. 업으로서 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변호사법 72조), ADR법은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업으로서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무대신의 인증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인증 기준으로서 분쟁 분야의 전문성 외에 변호사에 의한 조언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ADR법 6조 1호~16호). 단, SG조약 실시법의 적용 범위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약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기 인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footnote-ref-9)
10. 조약실시법상 양 당사자가 일본기업이라도 한쪽 모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등에는 국제성이 인정되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조정인으로서 실시한 절차에 의한 ADR 화해에도 집행력이 부여되게 된다(동법 2조 3항 1호 참조. 단, ADR법상 시효의 완성 유예 등의 법적 효과[ADR법 25조]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쨌든, med- arb등 중재와 조정의 조합이 다용되는 상사 분쟁에 대해, 조정인과 중재인의 자격이 다른 것으로, 원활한 절차 운영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footnote-ref-10)
11. 竹下守夫「民事試行における実体法と手続法」同『民事執行における実体法と手続法』（有斐閣・1990〔初出・1984年〕45頁、55頁以下。 [↑](#footnote-ref-11)
12. 中野貞一郎『民事執行法』151頁。 [↑](#footnote-ref-12)
13. 竹下・前掲注10・55頁以下、山本・前掲注＊312頁、条解民事執行法（第二版）135頁〔垣内秀介〕等参照。 [↑](#footnote-ref-13)
14. 東京高判平成23年6月22日参照。 화해계약이 유효하면 분쟁을 그만두게 되므로(민법 695조·696조), 그에 한해 조정이용합의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한 소송에 대신하는 분쟁해결을 요구할 의사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어 중재합의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의사이다. 그렇다면 집행결정 등을 통해 해결 결과의 강제적 실현에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도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footnote-ref-14)
15. 만일 당사자 일방의 관여 기회를 주지 않는 "준칙"이 주장된다고 해도, "공공질서에 관한 것"(조약 5조 1(f), 조약실시법 5조 12항 5호 괄호서 참조)으로 판단되게 될 것이다. [↑](#footnote-ref-15)
16. "조정인"의 확인에 의하여 합의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으면 ①을 충족한 것이라고 하기 쉽지만, 확인결과 변경의 필요가 없음이 "조정인"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를 배제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footnote-ref-16)
17. 조정인 대신 ODR의 시스템이 교섭을 기록하고 합의를 문서화하는 기술 하에서는, 비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footnote-ref-17)
18. 행동경제학의 지견(知見)이 나타내듯이, 교섭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바이어스(bias)나 불합리성이 내재한다. [↑](#footnote-ref-18)